

2024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

□ 지원대상 : 우선지원대상기업

❖ 지원제외 사업주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
❖ 지원제외 근로자

-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, • 고용보험 미가입자
- 사업주(법인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외국인(거주(F-2)·영주(F-5)·결혼이민자(F-6)는 제외)

□ 지원요건

① 육아휴직 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-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

②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

-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
-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,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.

-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(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)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(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)

※ 단,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

※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, 정년, 계약만료,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

□ 지원수준

① 육아휴직 지원금: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~200만원 지원

지원대상	지원구분	회차별지원액 (1개월 단위)
우선지원 대상기업	대장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	월 30만원
	육아휴직 특례* 적용 시 첫 3개월	월 200만원
	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	월 30만원

※ 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(연속)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

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: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~40만원 지원

지원대상	지원구분	회차별지원액 (1개월 단위)
우선지원 대상기업	우선지원대상기업	월 30만원
	인센티브* 적용	월 40만원

※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례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

③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: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(최대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

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,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.

□ 지급기간 및 주기

① 육아휴직 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- (기간)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
- (주기)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%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, 나머지 50%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

② 대체인력 지원금

- (기간)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(시작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)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
- (주기)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%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, 나머지 50%는 해당

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(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)

※ 다만, 동 휴가·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